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교수회 검토 의견서

1. 지난 1차 추경예산에서 강사법과 관련한 추경예산(9.5억원)의 경우 보수적(인건비성 예산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으로 예산을 책정했던 바, 이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 및 잔여 예산의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자체시설확충비와 관련해서 통합편성 후에 시설과와 기획처가 순위를 결정하는 바, 확보된 예산의 집행 순위의 확정을 위해서 공정성을 확보한 위원회(시설공간조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점은 지난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동일하게 권고하였습니다.
3. 재무과의 기관공통운영비는 본예산에서 전년 대비 20%(5억)를 증액하였는데, 추경에서 1억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액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증액 요청시에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설과(농업생명과학대학)의 총주학술림 관리사 신축사업은 본예산에 없던 사업으로 추경에서 신규신청하였는데, 회계연도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예산을 추가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시급하지 아니한 시설예산은 가능한 한 본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시행에 수 년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의 경우(예: 무인경비시스템 구축사업), 연차별 예산배정액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